

건축대학 건축학부 정시모집 입학자의 전공 배정 기준에 관한 내규

(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)

[제정: 2015년 12월 14일]

[개정: 2017년 4월 24일]

1. 본 내규는 2016학년도 이후 건축대학 건축학부(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학전공)에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
2. 예비신청 및 본신청을 통해 가배정 및 본배정되는 전공별 정원은, 별표와 같이 건축학부에서 정한 당해년도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의 전공별 입학정원 비율에 따라 정해지며, 전공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는 학생 수는, 별표의 전통건축전공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각 항과 같다.
 - ① 2016학년도 입학생은 전통건축전공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 입학정원의 10% 이내.
 - ②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전통건축전공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 입학정원의 30% 이내.
 - ③ 단, 전통건축전공의 경우 2016학년도는 정시모집 수능우수자전형 입학정원의 10%, 2017학년도 이후는 30% 이상 미달되지 않도록 배정한다.
3. 입학시에 전공을 예비신청하며, 전공을 가배정할 때 전공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학생의 선발 기준은 입학성적순으로 한다.
 - ① 예비신청시 본 내규에 의거한 전공 배정에 대한 동의서에 서약하여 제출한다. (별첨: 동의서)
4. 1학년 재학 중 12월에 희망 전공을 본신청하고, 본배정은 익년 1월까지 건축대학 전공주임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다.
5. 전공을 본배정할 때 전공별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학생의 선발 기준은, 1학년 전체 학기 성적순으로 한다.
 - ① 건축학부 교과이수모형에 제시된 1학년 전공필수교과와 권장 선택교과를 반드시 포함해 매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우선으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.
 - ② 동점자에 대해서는 설계영역 교과의 성적, 기타 전공필수, 전공선택 교과의 성적순으로 선발하되, 해당 교과의 성적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전공주임교수와 적성에 관한 심층면담을 통해 전공을 결정한다.
 - ③ 위 ②항의 동점자 처리기준은 매학기 17학점 미만 이수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6. 1학년 전체 학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휴학한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전에 본배정된 전공으로 복학한다.
7. 건축학부 내 전공간의 전과는 불허한다.
8. 기타 모든 학사일정은 학칙에 따른다.
9. 상기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건축대학 교수회의를 통해 학장이 최종 결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6. 3. 1부터 시행한다.

별 표

건축학부 전공별 입학정원(2016-2018학년도)

전공	수시모집	정시모집		계(94)
		수능우수자전형	실기전형	
건축학	30	20	10	60
전통건축	10	7	0	17
공간디자인	10	7	0	17

동 의 서

- 소 속: 건축대학 건축학부
- 이 름:
- 학 년:
- 학 번:

상기의 본인은 ‘건축대학 건축학부 정시모집 입학자의 전공 배정 기준에 관한 내규’에 의거한 전공 배정 결과(가배정 포함)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, 배정된 전공의 학업에 충실히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.

예비신청 전공 : 건축학전공() / 전통건축전공()

20 년 월 일

서명: _____ (인)

명지대학교 건축대학장 귀하

CAMU